나주역자이 리버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 Home 앱 설치 바로 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부터 민영주택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10.29.부터 KB모바일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하여 청약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https://xi.co.kr/naju)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홈페이지(https://xi.co.kr/naju)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입장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사전예약 접수 일정 및 방문 가능 기간(사전방문, 당첨자 서류 접수, 공급계약 체결(예비입주자 포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 접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분양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 사업 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4.**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나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나 '나주시 공고 제2017-17호'(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 0%)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 부임 불인정
- 단독 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 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O	O	O	O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공급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공급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xi.co.kr/naju)**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1, 2순위의 경우 추점제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제3항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은 가점순이 아닌 100%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 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12.24.)**'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전매제한 없음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주택법」제 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 10% 납부 후 전매 가능하며 전매 가능일자는 사업 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 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체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2.01.03.(월)	2022.01.04.(화)	2022.01.05.(수)	2022.01.11.(화)	2022.01.12(수) ~ 2022.01.22(토)	2022.01.24.(월) ~ 2022.01.29(토)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2021.11.01.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작시간 : 기존 08시 → 변경 09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 주체에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거 「전남 나주시 건축허가과 - 67881(2021.1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35-3번지 일원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2층, 18개동, 총 1,554세대 중 일반분양 1,55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특별공급 687세대 : 일반(기관추천) 121세대, 다자녀가구 157세대, 신혼부부 242세대, 노부모부양 46세대, 생애최초 121세대 포함]
▌입주 예정 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919	01	059.9946A	59A	59.9946	19.5377	79.5323	36.9909	116.5232	31.96	74	7	7	15	2	7	38	36	3
		02	059.9690B	59B	59.9690	19.4092	79.3782	36.9752	116.3534	31.90	80	8	8	16	2	8	42	38	3
		03	084.9486A	84A	84.9486	25.5116	110.4602	52.3768	162.8370	44.38	475	48	48	95	14	48	253	222	20
		04	084.9706B	84B	84.9706	25.3779	110.3485	52.6235	162.9720	44.34	319	32	32	64	10	32	170	149	13
		05	084.8512C	84C	84.8512	25.7955	110.6467	52.4729	163.1196	44.46	169	17	17	34	5	17	90	79	6
		06	084.9759D	84D	84.9759	25.4903	110.4662	52.3937	162.8599	44.39	91	9	9	18	3	9	48	43	3
		07	116.5178	116	116.5178	33.3929	149.9107	71.8414	221.7521	60.23	328	-	33	-	10	-	43	285	14
		08	131.2333	131	131.2333	41.5401	172.7734	80.9146	253.6880	60.42	5	-	1	-	-	-	1	4	-
		09	132.3764	132	132.3764	41.8922	174.2686	81.6194	255.8880	70.03	8	-	1	-	-	-	1	7	-
		10	179.5172	179	179.5172	53.8753	233.3925	110.6850	344.0775	93.79	5	-	1	-	-	-	1	4	-
합계											**1,554**	**121**	**157**	**242**	**46**	**121**	**687**	**867**	**62**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2.02.15	2022.07.18	2022.12.19	2023.05.17	2023.10.17	2024.03.18	2024.08.19	
59A	113동 4호 114동 4호 115동 4호	2층	3	67,581,590	156,718,410	-	224,300,000	10,000,000	12,430,000	22,430,000	22,430,000	22,430,000	22,430,000	22,430,000	22,430,000	67,290,000
		3층~4층	6	70,534,330	163,565,670	-	234,100,000	10,000,000	13,410,000	23,410,000	23,410,000	23,410,000	23,410,000	23,410,000	23,410,000	70,230,000
		5층~9층	15	72,010,700	166,989,300	-	239,000,000	10,000,000	1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23,900,000	71,700,000
		10층~19층	30	73,456,940	170,343,060	-	243,800,000	10,000,000	14,380,000	24,380,000	24,380,000	24,380,000	24,380,000	24,380,000	24,380,000	73,140,000
		20층 이상	20	74,933,310	173,766,690	-	248,700,000	10,000,000	14,870,000	24,870,000	24,870,000	24,870,000	24,870,000	24,870,000	24,870,000	74,610,000
59B	113동 3호 114동 3호 115동 3호	2층	3	66,768,080	154,831,920	-	221,600,000	10,000,000	1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22,160,000	66,480,000
		3층~4층	6	69,660,560	161,539,440	-	231,200,000	10,000,000	13,120,000	23,120,000	23,120,000	23,120,000	23,120,000	23,120,000	23,120,000	69,360,000
		5층~9층	15	71,106,800	164,893,200	-	236,000,000	10,000,000	1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0,800,000
		10층~19층	30	72,553,040	168,246,960	-	240,800,000	10,000,000	14,080,000	24,080,000	24,080,000	24,080,000	24,080,000	24,080,000	24,080,000	72,240,000
		20층 이상	26	74,029,410	171,670,590	-	245,700,000	10,000,000	14,570,000	24,570,000	24,570,000	24,570,000	24,570,000	24,570,000	24,570,000	73,710,000
84A	102동 3·4호	1층	7	90,359,870	209,540,130	-	299,900,000	10,000,000	1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29,990,000	89,970,000

주택형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2.02.15	2022.07.18	2022.12.19	2023.05.17	2023.10.17	2024.03.18	2024.08.19	
84B	103동 3·4호 104동 3·4호 105동 3·4호 110동 1·2호 111동 1·3호 116동 1·2호 117동 1·2호	2층	15	97,801,980	226,798,020	-	324,600,000	10,000,000	2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97,380,000
		3층~4층	32	102,050,310	236,649,690	-	338,700,000	10,000,000	2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101,610,000
		5층~9층	80	104,159,410	241,540,590	-	345,700,000	10,000,000	24,570,000	34,570,000	34,570,000	34,570,000	34,570,000	34,570,000	34,570,000	103,710,000
		10층~19층	159	106,298,640	246,501,360	-	352,800,000	10,000,000	2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105,840,000
		20층 이상	90	108,437,870	251,462,130	-	359,900,000	10,000,000	2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107,970,000
	105동 1·2호 107동 1·3호	1층	1	92,167,670	213,732,330	-	305,900,000	10,000,000	2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30,590,000	91,770,000
		2층	3	99,760,430	231,339,570	-	331,100,000	10,000,000	23,110,000	33,110,000	33,110,000	33,110,000	33,110,000	33,110,000	33,110,000	99,330,000
		3층~4층	8	104,099,150	241,400,850	-	345,500,000	10,000,000	2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34,550,000	103,650,000
		5층~9층	20	106,268,510	246,431,490	-	352,700,000	10,000,000	25,270,000	35,270,000	35,270,000	35,270,000	35,270,000	35,270,000	35,270,000	105,810,000
		10층~19층	40	108,437,870	251,462,130	-	359,900,000	10,000,000	2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107,970,000
		20층 이상	20	110,607,230	256,492,770	-	367,100,000	10,000,000	2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110,130,000
	101동 1·2호	2층	2	99,639,910	231,060,090	-	330,700,000	10,000,000	2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33,070,000	99,210,000
		3층~4층	4	103,978,630	241,121,370	-	345,100,000	10,000,000	2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103,530,000
		5층~9층	10	106,147,990	246,152,010	-	352,300,000	10,000,000	2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105,690,000
		10층~19층	20	108,317,350	251,182,650	-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20층 이상	8	110,486,710	256,213,290	-	366,700,000	10,000,000	2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110,010,000
	101동 3·4호 112동 1·2·4호 113동 1·2호 114동 1·2호 115동 1·2호	1층	2	90,269,480	209,330,520	-	299,600,000	10,000,000	19,960,000	29,960,000	29,960,000	29,960,000	29,960,000	29,960,000	29,960,000	89,880,000
		2층	11	97,711,590	226,588,410	-	324,300,000	10,000,000	22,430,000	32,430,000	32,430,000	32,430,000	32,430,000	32,430,000	32,430,000	97,290,000
		3층~4층	22	101,959,920	236,440,080	-	338,400,000	10,000,000	2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101,520,000
		5층~9층	55	104,069,020	241,330,980	-	345,400,000	10,000,000	2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103,620,000
		10층~19층	110	106,208,250	246,291,750	-	352,500,000	10,000,000	25,250,000	35,250,000	35,250,000	35,250,000	35,250,000	35,250,000	35,250,000	105,750,000
		20층 이상	75	108,317,350	251,182,650	-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84C	107동 2호	1층	1	91,384,290	211,915,710	-	303,300,000	10,000,000	2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30,330,000	90,990,000
		2층	1	98,916,790	229,383,210	-	328,300,000	10,000,000	2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32,830,000	98,490,000
		3층~4층	2	103,225,380	239,374,620	-	342,600,000	10,000,000	2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34,260,000	102,780,000
		5층~9층	5	105,364,610	244,335,390	-	349,700,000	10,000,000	2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34,970,000	104,910,000
		10층~19층	10	107,533,970	249,366,030	-	356,900,000	10,000,000	2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107,070,000
		20층 이상	2	109,673,200	254,326,800	-	364,000,000	10,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108동 3호 109동 3호 110동 3호 111동 2호 112동 3호	1층	1	89,606,620	207,793,380	-	297,400,000	10,000,000	1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29,740,000	89,220,000
		2층	5	96,988,470	224,911,530	-	321,900,000	10,000,000	2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32,190,000	96,570,000
		3층~4층	10	101,206,670	234,693,330	-	335,900,000	10,000,000	2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33,590,000	100,770,000
		5층~9층	25	103,315,770	239,584,230	-	342,900,000	10,000,000	24,290,000	34,290,000	34,290,000	34,290,000	34,290,000	34,290,000	34,290,000	102,870,000
		10층~19층	50	105,424,870	244,475,130	-	349,900,000	10,000,000	2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34,990,000	104,970,000
		20층 이상	57	107,533,970	249,366,030	-	356,900,000	10,000,000	2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107,070,000
84D	108동 4호 109동 4호 110동 4호	2층	3	97,801,980	226,798,020	-	324,600,000	10,000,000	2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32,460,000	97,380,000
		3층~4층	6	102,050,310	236,649,690	-	338,700,000	10,000,000	2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33,870,000	101,610,000
		5층~9층	15	104,189,540	241,610,460	-	345,800,000	10,000,000	2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34,580,000	103,740,000
		10층~19층	30	106,298,640	246,501,360	-	352,800,000	10,000,000	2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35,280,000	105,840,000
		20층 이상	37	108,437,870	251,462,130	-	359,900,000	10,000,000	2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35,990,000	107,970,000

주택형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2022.02.15	2022.07.18	2022.12.19	2023.05.17	2023.10.17	2024.03.18	2024.08.19	
116	102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1·2호 106동 1·2호 108동 1·2호 109동 1·2호 118동 1·2호	1층	1	128,602,153	298,270,770	29,827,077	456,700,000	10,000,000	3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45,670,000	137,010,000
		2층	11	139,189,937	322,827,330	32,282,733	494,300,000	10,000,000	3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148,290,000
		3층~4층	28	145,244,122	336,868,980	33,686,898	515,800,000	10,000,000	4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51,580,000	154,740,000
		5층~9층	70	148,257,135	343,857,150	34,385,715	526,500,000	10,000,000	4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157,950,000
		10층~19층	134	151,298,307	350,910,630	35,091,063	537,300,000	10,000,000	43,730,000	53,730,000	53,730,000	53,730,000	53,730,000	53,730,000	53,730,000	161,190,000
		20층 이상	84	154,311,320	357,898,800	35,789,880	548,000,000	10,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31	101동 1호	20층 이상	1	242,533,467	562,515,030	56,251,503	861,300,000	30,000,000	5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258,390,000
	101동 3호 112동 1호 114동 1호 115동 1호	20층 이상	4	237,774,596	551,477,640	55,147,764	844,400,000	30,000,000	5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253,320,000
132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10동 1호 116동 1호 117동 1호	20층 이상	7	239,830,203	556,245,270	55,624,527	851,700,000	30,000,000	5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85,170,000	255,510,000
	105동 1호	20층 이상	1	244,617,233	567,347,970	56,734,797	868,700,000	30,000,000	5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260,610,000
179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106동 1호 118동 1호	10~19층	1	390,509,012	905,719,080	90,571,908	1,386,800,000	30,000,000	10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138,680,000	416,040,000
		20층 이상	4	392,395,665	910,094,850	91,009,485	1,393,500,000	30,000,000	109,35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139,350,000	418,050,000

■ 공통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상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의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가전 옵션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 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 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 주체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 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59A	59B	84A	84B	84C	84D	116	131	132	179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2**	**3**	**10**	**8**	**6**	**4**	-	-	-	-	**3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0**	**8**	**3**	**1**	-	-	-	-	**2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10**	**5**	**3**	**1**	-	-	-	-	**21**	
	중소기업 근로자		**1**	**1**	**10**	**5**	**3**	**1**	-	-	-	-	**21**	
	장애인	전라남도	**1**	**1**	**4**	**3**	**1**	**1**	-	-	-	-	**11**	**22**
		광주광역시	**1**	**1**	**4**	**3**	**1**	**1**	-	-	-	-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	**8**	**48**	**32**	**17**	**9**	**33**	**1**	**1**	**1**	**157**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6**	**95**	**64**	**34**	**18**	-	-	-	-	**24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14**	**10**	**5**	**3**	**10**	-	-	-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7**	**8**	**48**	**32**	**17**	**9**	-	-	-	-	**121**	
합 계			**38**	**42**	**253**	**170**	**90**	**48**	**43**	**1**	**1**	**1**	**687**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한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 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td><td>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td></tr>
<tr><td>유의사항</td><td>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중복청약 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선정 = 부적격, 예비 무효

③ 특별공급 당첨(예비당첨) + 특별공급 신청 후 낙첨(신청 이력) = 당첨자 부적격(예비 무효), 낙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 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abl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21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지방 보훈청 복지과	062-975-6702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62-360-9148
장애인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4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061-286-562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5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 수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 4명	35	
		미성년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 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 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3) 세대 구성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24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 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가구원 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근무 월수)		상기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근무 월수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근무 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4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 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의 2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혼인 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21세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생애 최초 우선 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 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인 가구	160% 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 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④ 상기 ②, ③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 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 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 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인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85㎡이하 주택만 청약가능) ③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 접수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의 신청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청약부금은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청약 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세대 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 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 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 ②	잔여 세대		잔여 세대 추가계약①	주택 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 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 소유
B 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 소유 / (나) 주택 소유
C 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 소유 / (가), (나) 주택 소유 아님
D 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 소유 / (가) 주택 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 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 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 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 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주택형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 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 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시 청약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방문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Ⅳ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1.03.(월) (청약 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 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 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한정)
일반공급	1순위	2022.01.04.(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2.01.05.(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APT 청약 신청」⇒「Step 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 구성원 등록/조회」⇒「세대 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 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특별공급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서류유형</th><th rowspan="2">해당 서류</th><th rowspan="2">발급기준</th><th rowspan="2">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th></tr>
<tr><th>필수</th><th>추가
(해당자)</th></tr>
<tr><td rowspan="6">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td><td>O</td><td></td><td>주민등록증</td><td rowspan="6">본인</td><td>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td></tr>
<tr><td>O</td><td></td><td>인감증명서, 인감도장</td><td>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td></tr>
<tr><td>O</td><td></td><td>주민등록표등본(상세)</td><td>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td></tr>
<tr><td>O</td><td></td><td>주민등록표초본(상세)</td><td>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td></tr>
<tr><td>O</td><td></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td><td>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td></tr>
<tr><td>O</td><td></td><td>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td><td>-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td></tr>
</table>

		O	단신부임 입증서류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다자녀 특별공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생관련증명서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그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기간 및 혼인일 확인, "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O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임신증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배우자)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출생관련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대조일 : 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O	비사업자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 최초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 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O		자격요건 확인서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대조일:2020.1.1.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O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출생관련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 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 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 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 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 등기부 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 조서)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 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견본주택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 증명서 (직인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직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 직장

V 당첨자발표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 일시 : **2022.01.11. (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 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01.11.(화)~2022.01.2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공일시	**2022.01.1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청약 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2022.01.12.(수)~2022.01.22.(토) 10:00~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견본주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475번지)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	•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대리인 계약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O	당첨 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 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Ⅶ 계약체결 안내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2022.01.24.(월)~2022.01.29.(토) 10:00~16:00**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견본주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475번지) ***사전방문 예약제로 계약체결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 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 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5㎡ 초과 주택형 및 발코니확장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308089**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중도금 ·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 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사업 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 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 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나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비투기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차, 2차)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 및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가전 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 일정, 계약 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 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 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2년 7월 18일	입주지정일
59A	15,900,000	1,590,000	1,590,000	12,720,000
59B	15,400,000	1,540,000	1,540,000	12,320,000
84A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84B	19,600,000	1,960,000	1,960,000	15,680,000
84C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84D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116	22,900,000	2,290,000	2,290,000	18,320,000
131	61,000,000	6,100,000	6,100,000	48,800,000
132	57,300,000	5,730,000	5,730,000	45,840,000
179	70,800,000	7,080,000	7,080,000	56,640,000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308067**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중도금 ·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및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유무상 옵션 타입 반영)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 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 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 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① 마감 및 공간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제공품목

욕실 특화	마감 특화	주방 특화	가구 옵션
• 포셀린 타일(벽, 바닥) • 포켓도어 (파우더룸/부부욕실) * 일부 해당타입 • 수전, 도기(일부) 및 조명	• 포셀린타일(벽,바닥) • 시트패널 (현관/복도 일부) • 우물천장 간접조명 등 (거실/복도 일부) • 침실 직부등 등	• 침실 공간구조 선택 - 대면형 다이닝(84A), 와이드 다이닝(84D), 디럭스 다이닝(116) • 부착형 주방가구 및 랜지후드 •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등	• 침실 붙박이장 • 냉장고장(특화수납장)

■ 공급금액

주택형 (타입)	욕실 특화	마감 특화	주방 특화	가구 옵션	
				침실 붙박이장	냉장고장 (특화수납장)
59A	4,780,000	3,930,000	9,510,000	2,790,000	1,020,000
59B	4,780,000	4,420,000	6,580,000	2,790,000	1,020,000
84A	4,840,000	4,890,000	13,340,000	3,030,000	1,980,000
84B	4,840,000	4,590,000	11,090,000	3,030,000	1,980,000
84C	4,840,000	5,230,000	7,950,000	3,030,000	1,020,000
84D	4,840,000	4,800,000	10,540,000	3,030,000	1,020,000
116	6,010,000	5,270,000	18,160,000	3,270,000	1,700,000
131	5,740,000	5,990,000	11,460,000	3,110,000	2,670,000
132	5,740,000	5,990,000	11,730,000	3,110,000	2,670,000
179	8,410,000	6,750,000	12,180,000	3,500,000	3,690,000

② 개별 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제공품목

현관 중문	바닥재	
	원목마루	원목마루+포셀린타일
• 현관 중문	• 원목마루 ▶ 거실, 주방, 복도, 각 침실	• 원목마루 ▶ 각 침실 • 포셀린 타일 ▶ 거실, 주방, 복도

■ 공급금액

주택형 (타입)	현관 중문	바닥재	
		원목마루	원목마루+포셀린타일
59A	1,500,000	3,280,000	2,500,000
59B	1,500,000	3,010,000	2,290,000
84A	1,500,000	4,590,000	3,580,000
84B	1,500,000	4,470,000	3,260,000
84C	1,500,000	4,260,000	3,130,000
84D	1,500,000	4,550,000	3,570,000
116	1,500,000	5,940,000	4,510,000
131	1,500,000	6,490,000	4,870,000
132	1,500,000	6,490,000	4,870,000
179	1,700,000	8,910,000	6,560,000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으며,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목마루 선택 시 거실+주방+복도+각 침실을 포함하여 시공되며, 원목마루+포셀린타일 선택 시 거실+주방+복도는 포셀린타일, 각 침실만 원목마루로 시공됩니다.
- 상기 개별옵션 중 바닥재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납부 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	플러스옵션 계약시	2022.07.18	입주지정기간	하나 은행	계약금	231-910010-45805	GS건설(주)
					중도금 ·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및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옵션 선택품목 ※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A 59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170,000	LG전자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4,34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5,600,000		
84A 84B 84C 84D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4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1개소	4,60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개소	6,140,000		
84A 84D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3개소	7,240,000		주방옵션 미선택시 가능
116 131 132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7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6,16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7,51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8,610,000		
179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6,76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1개소	7,94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개소	9,22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3개소	10,77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 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84A, 84D, 116 침실4 공간 옵션 선택 시에는 침실4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불가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59A 59B 84A 84B 84C 84D 116	2대	선택1	거실, 주방	1,750,000	자이에스앤디㈜	
		선택2	거실, 침실1	1,75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5,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75,000		
131 132 179	2대	선택1	거실, 주방	1,750,000		
		선택2	거실, 침실1	1,75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5,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75,000		
	6대	선택5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5,250,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침실4는 시스클라인 설치를 제외합니다.
- 발코니 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 붙박이장 설치 침실은 설치공간 부족으로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5,750,000	LG전자	홈바형
		S691SI34BS2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광파오븐	MZ385EBTD	540,000		
	식기세척기	DUB22SB2	1,100,000		
	쿡탑	BEI3GTBI	1,220,000		인덕션 3구
		CIHR-D303FB	450,000	쿠쿠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쿡탑 설치 시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선택안	설치 개소	공급금액	비고
59A	가시광선 투과율 50 / 70	7개소	1,230,000	
59B		6개소	1,140,000	
84A		7개소	1,460,000	
84B		7개소	1,650,000	
84C		6개소	1,350,000	
84D		7개소	1,460,000	
116		8개소	1,840,000	
131		15개소	4,060,000	
132		14개소	3,970,000	
179		16개소	4,650,0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전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 옵션	납부계좌, 납부 일정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가전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계약 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 옵션 선택품목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와 관련된 계약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품목 계약이 가능한 기간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시공 전문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 선택품목 총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 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 후에는 사업 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 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 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해당 시공전문회사 자이에스앤디(주)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됨을 필히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 공사・타일 공사・주방 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월 : 2025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입주 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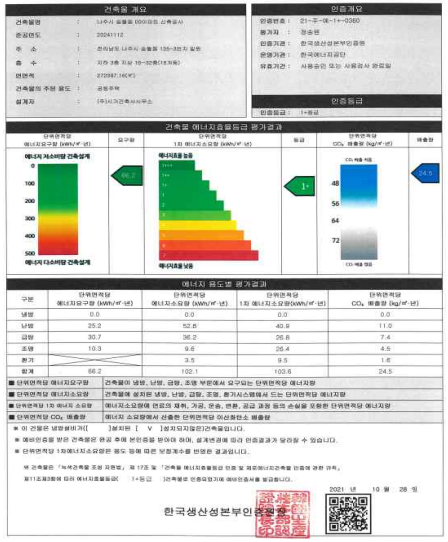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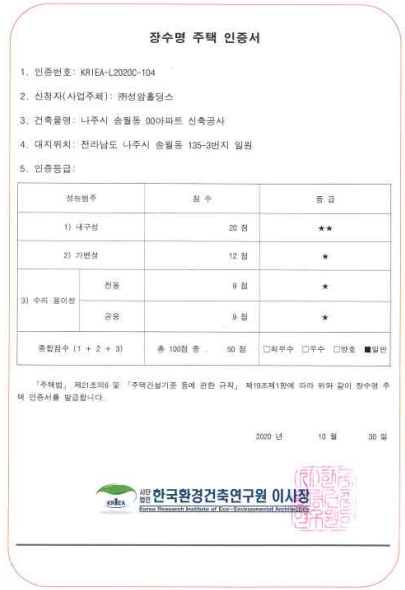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녹색 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 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구분	등급
중요도(Ⅰ)	Ⅶ-0.197g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Ⅰ~Ⅶ)으로 표기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3층 2.7m로 계획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인씨엠 건축사사무소	(유)에프씨
금 액	5,135,495,200	1,006,371,000	1,76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 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 주체 겸 시행위탁자	사업 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성암홀딩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B동 5층 514호 (빛가람동, 토담스타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205511-0053934	110111-7125720	110111-000269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18600호	**420,264,0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 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관리형토지신탁

①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성암홀딩스(이하"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성암홀딩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성암홀딩스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성암홀딩스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④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성암홀딩스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게 있습니다.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⑥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⑧ 본 조의 각 조항은 본 계약서 모든 조항에 우선합니다.

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UB XIAN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인허가	각종 홍보물은 2021년 11월 사업계획(변경) 승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단지 북측에는 빛가람로, 남측, 동측, 서측에는 신규개통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소음 예측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계획(북측, 서쪽 일부)되어 있으나, 택지 내 도로 및 아파트 골조 완료 후 실시하는 소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본 단지는 주변의 항공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나주 KTX역 및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포츠파크 야간 운영시간 동안 스포츠 조명으로 인해 빛공해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공공 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지 서측은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향후 별개의 개발사업(공동주택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단지의 생활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의 일부지역은 백로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관련청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생태계보존대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역내 기존철탑 이설계획에 따라 단지 동측에 단지경계와 최단 약 70m거리의 토지상(나주시 송월동 171-1번지)에 송전선로 지중화 원통형 철탑 1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탑사양은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나주시·군·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영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영산중학교 및 영산포여자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비평준화 지역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옥상구조물의 경관조명 설치로 옥상에 인접한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108동, 113동)
		문주설치로 인해 105동, 106동, 116동, 117동 저층세대 일부는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램프 인접동(105동, 106동, 108동, 109동) 저층세대는 램프구조물에 의해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벽에 특화를 위한 금속구조물과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 빛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8동 옥상층 CLUB CLOUD의 유리마감, 장식구조물,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있을 수 있고, 인접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도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및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10동 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에 레벨 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재연구획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101동, 112동, 113동의 세대 전·후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방음벽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4동 후면, 114동 측벽, 114동 115동 사이, 115동 116동 사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이 설치됩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 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일조 공간제어시스템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치장 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 출입구 측 지상 차량 회전 구간에는 스쿨버스존과 차량 승하차를 위한 DROP ZONE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설치예정 위치: 옥상층 : 103동, 105동, 108동, 110동, 111동

		지상1층 : 101동 인근, 103동 인근, 106동 인근, 113동 인근, 114동 인근, 116동 인근 지하1층 : 113동 제연휀룸, 115동 전기실 지하2층 : 102동, 105동 PIT 지하3층 : 102동, 105동 PIT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상 레벨 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 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과 112동, 113동 우측에 보행로는 대지내 공지(공공조경)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어린이집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출입구의 형태는 모형, CG와 달리 특화설계시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출입구 쪽에 면한 일부 1층 세대에는 조망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계획된 부대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비, 피트니스클럽, GX, 열린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룸 등) 및 부속동(경로당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없는 경우 제외) 등)에는 입주지정 기간을 전후하여 입주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 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UB CLOUD 전용 홀 및 엘리베이터 코어의 형태와 크기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8동은 근린생활시설과 구조물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LUB CLOUD 테라스 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 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2,163대, 근린생활시설 지하 29대, 지상 어린이집 3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7대 총 2,20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 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급속10개, 완속20개, 전기 콘센트 470개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9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지하 2층, 3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00m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는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 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1, 4 외부 및 근린생활시설-3 내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 및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 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세대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펜트하우스 세대는 2700mm)
		세대의 조망을 위하여 101동 2호라인의 84㎡타입, 102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3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4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5동 2호라인의 84㎡타입, 108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9동 2호라인의 116㎡타입, 110동 2호라인의 84㎡타입, 112동 2호라인의 84㎡타입 거실 아트월은 침실2에 면한 벽체에 설치됩니다.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 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소유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 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침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벽에는 공사용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용 개구부의 마감은 사업승인신청일 기준 허가시 신청한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급 이상의 건식 벽체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힌지, 레일 등은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세대(131, 132, 179 ㎡ 타입의 경우)가 배치된 경우 하부층과는 다른 평면 변화에 따라 직하 세대 천장에 우·오수 배관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 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일부 누수,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과정에 의해 하향식 피난구가 외부에 설치되어, 인접한 드레스룸 및 침실의 경우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 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 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발코니 분합창 손잡이는 1개소만 설치가 됩니다.
	옥외공간 (테라스)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 테라스 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 소음진동 · 냄새 ·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옥외용 수전이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 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픈발코니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 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개방형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소매(홈구멍)를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개폐방식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 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욕실 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 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쿡탑 선택시 가스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특화(유상) 선택시, 전동플랩장 도어마감이 84㎡ 이하는 친환경시트, 116㎡ 이상은 글라스로 마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 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입에 따라 유 무상 옵션 선택시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 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 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매립 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 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 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알파룸, 베타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 유상옵션 주방TV폰)은 거리, 음성엔진 인식범위, 주변 소음, 전파방해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 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 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 디자인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세대의 조망을 위하여 101동 2호라인의 84㎡타입, 102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3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4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5동 2호라인의 84㎡타입, 108동 2호라인의 116㎡타입, 109동 2호라인의 116㎡타입, 110동 2호라인의 84㎡타입, 112동 2호라인의 84㎡타입 거실 아트월은 침실2에 면한 벽체에 설치되고, 월패드 위치도 아트월 위치로 변경되며 침실2번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이 문을 열었을 때 가려지지 않게 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되며, 옵션비용은 해당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주방특화(유상)옵션 선택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쿡탑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단, 전기쿡탑 옵션 미선택시에는 가스배관은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방특화(유상)옵션 선택시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며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또는 인덕션을 함께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만약 가스쿡탑을 선택 시 가스 배관 노출로 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싱크대 난방분배기 이외의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구동기 움직임 및 난방 배관 유체 흐름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 배선기구는 신규디자인 적용한 디자인목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제품사양,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미건립 59㎡ A B, 84㎡ C D 타입은 84㎡ A, 84㎡ B 타입에 준하여, 미건립 131㎡, 132㎡, 179㎡ 타입은 116㎡ 타입에 준하여 마감자재가 시공됩니다.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의 경우 타입마다 조명기구의 수량 및 타입, 설치 위치가 다를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침실 스마트 스위치는 유상옵션형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스마트 스위치가 적용됩니다.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84㎡ A, 116㎡ 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내추럴스타일로, 84㎡ B 타입은 모던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 조명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홈페이지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표현되는 견본주택 설치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s://xi.co.kr/naju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475**
■ **분양 문의 : 1833-4735**

시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위탁 (주)성암홀딩스 시공 GS 건설 문의 **1833-4735**